

#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(이민석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999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8월 11일

발 의 자: 이민석 의원(1명)

찬 성 자: 김길영, 김영철, 김용일,  
김재진, 김종길, 김지향,  
김춘곤, 김태수, 김형재,  
김혜영, 남궁역, 남창진,  
민병주, 박 석, 박영한,  
박춘선, 박환희, 서상열,  
소영철, 송경택, 신복자,  
옥재은, 유정인, 윤기섭,  
윤영희, 윤종복, 이봉준,  
이종태, 이종환, 임춘대,  
최민규, 최진혁, 허 훈,  
홍국표 의원(34명)

### 1. 제안이유

- 지방공무원의 연가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(안 제16조).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「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다.

제25조제1항 중 “연가일수 중”을 “연가일수 및 제16조제4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일수 중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6조(시간외근무와 공휴일 등 근무) ① ~ ③ (생략)  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16조(시간외근무와 공휴일 등 근무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 <u>④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「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다.</u></p>
<p>제25조(연가의 저축) ① 공무원은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<u>연가일수</u>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·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.                  ②·③ (생략)</p>	<p>제25조(연가의 저축) ① -----                  ----- <u>연가일수</u>                  및 제16조제4항에 따라 전환된 <u>연가일수</u> 중 -----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---.                  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